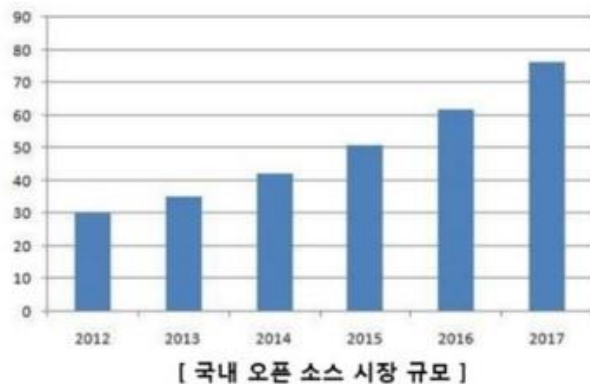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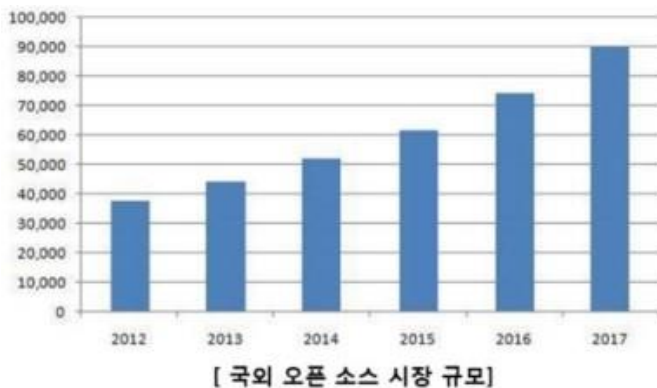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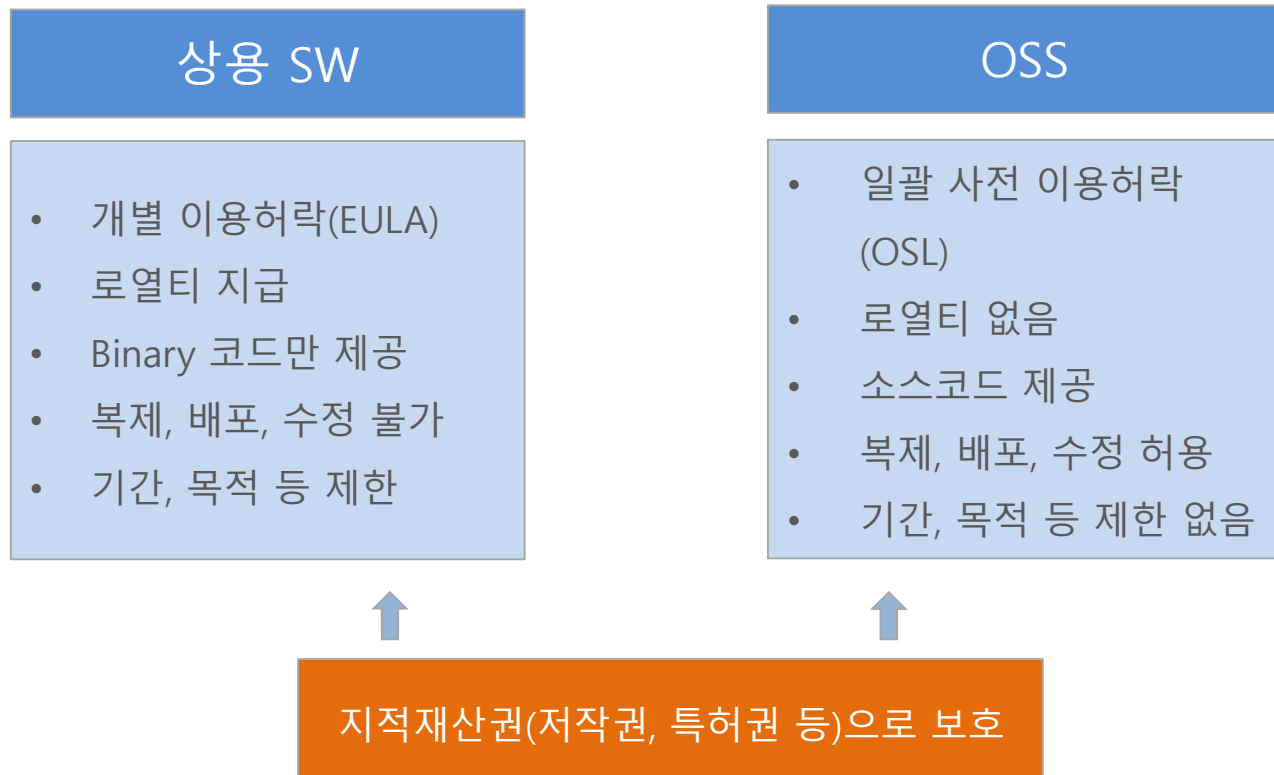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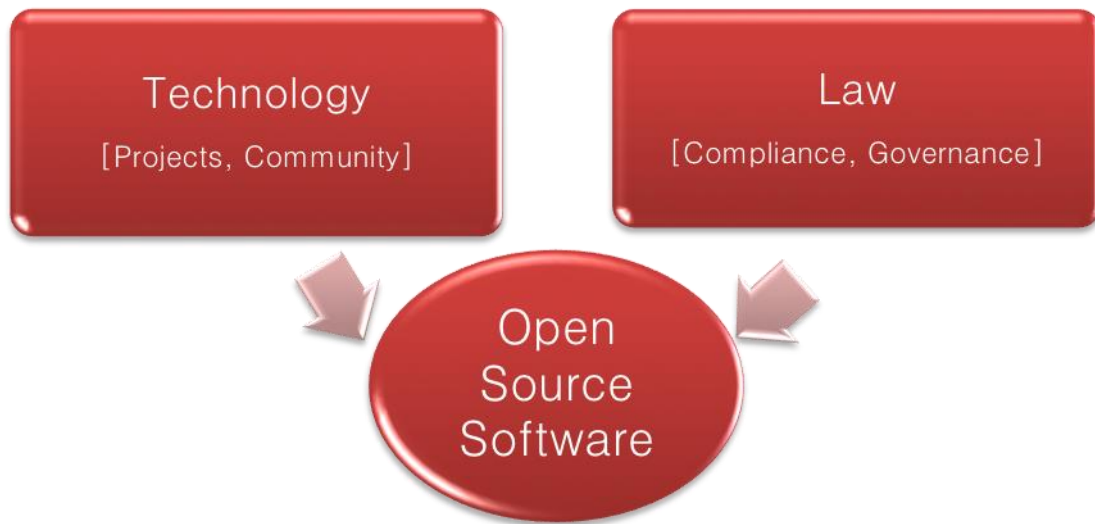
# 공개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이슈 및 분쟁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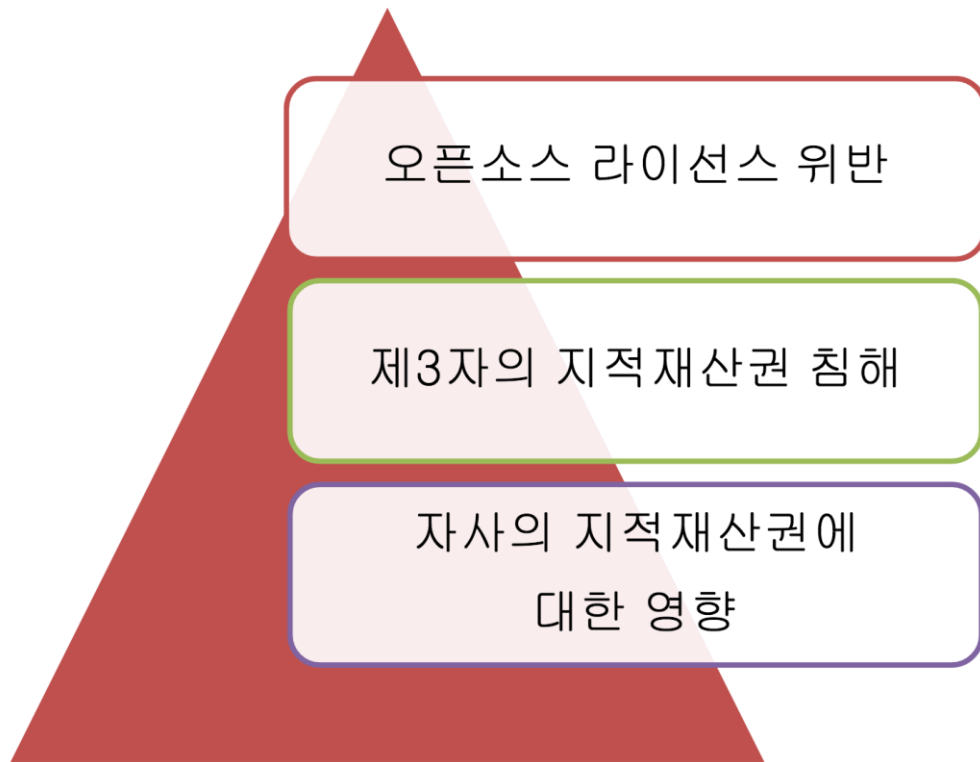
20178. 010.

- OSL(Open Source License)로 이용 허락된 소프트웨어
- 소스코드 (=blue print) 가 오픈 (공개) 되어 있음 - 누구나 "자유롭게" 사용, 수정, 복제, 배포
- 소프트웨어의 주류로 성장(ex. MS의 리눅스 재단 플래티넘 멤버 가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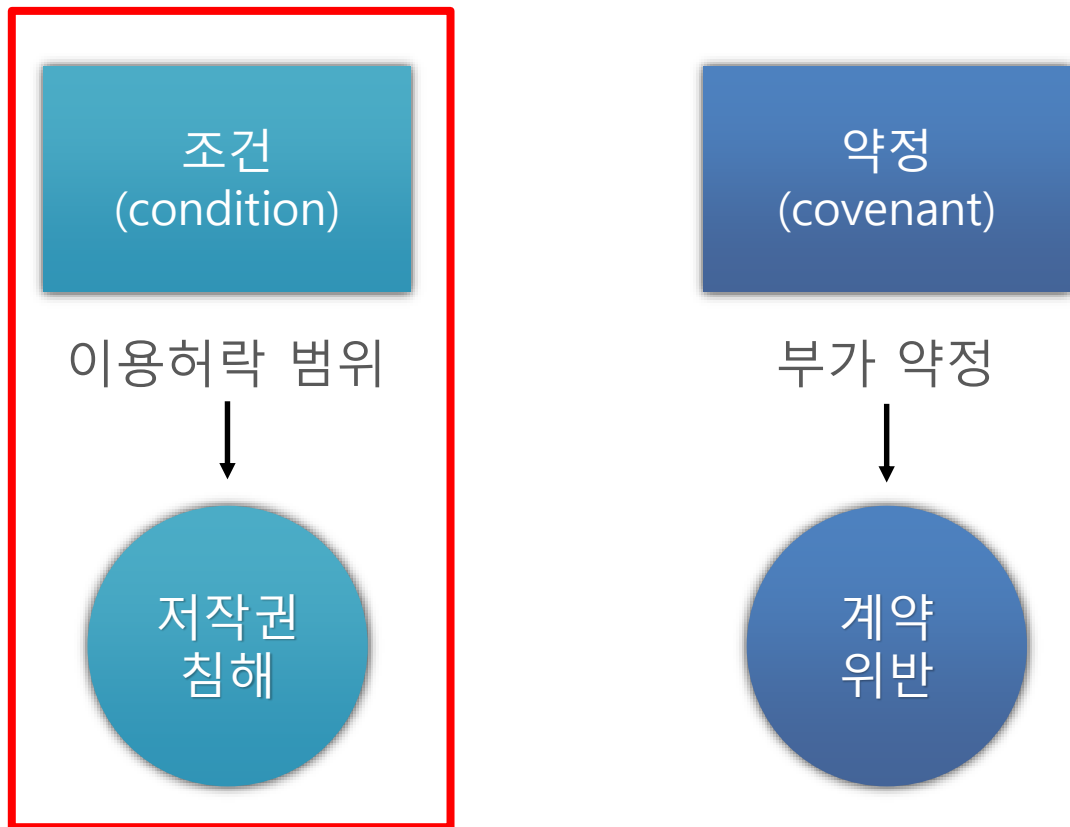






### 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

- 기류의 변화 – 금전적 배상 노리는 단체, 개인 등장
-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
  -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및 자사의 지적재산권 관리와 대응의 맥락에서 접근해야
-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



### ➤ 컴플라이언스 위반 - 법적 효과

- ▶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,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회사 (or 조직) 에 다양한 유형의 직접적 • 간접적 손해를 야기

#### 영업비밀의 공개 위험

-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,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였을 경우

#### 민사 책임

- 손해배상,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

#### 형사 고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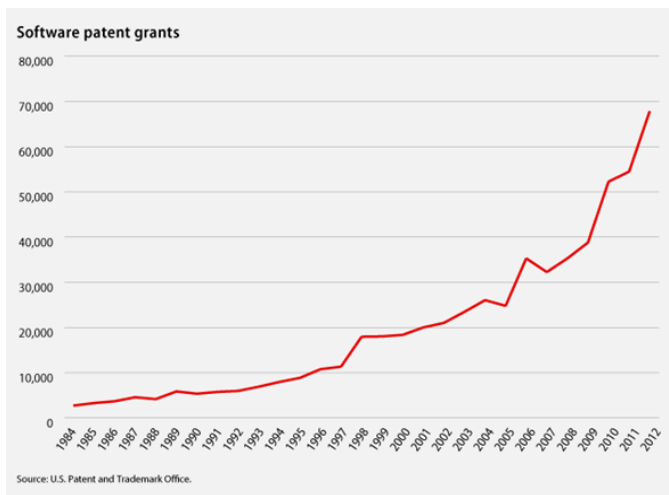
- 양벌 규정

#### 기타 손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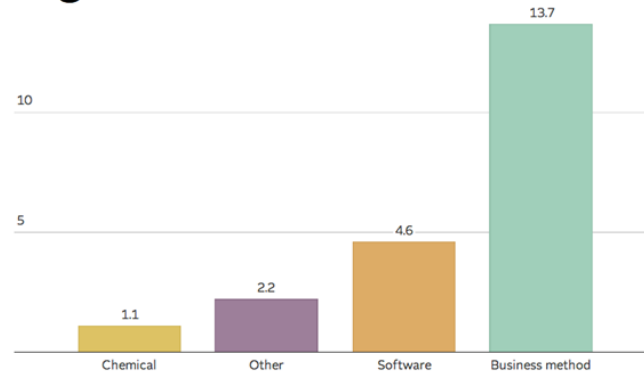
- 기업평판, 서비스 정지에 따른 고객 불만, 대체비용 등

### ➤ 오픈소스와 특허 (Patent)

#### ▶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분쟁 증가



#### Percentage of patents involved in litigation



Source: James Bessen and Michael Meurer



### ➤ 오픈소스와 특허 (Patent)

#### ▶ 오픈소스의 특허 침해 리스크

- 소프트웨어 특허는 하드웨어에 비해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침해 회피가 어려움
-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의 공개로 특허 침해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
- 오픈소스 SW 이용자는 cross-licensing 등을 이용한 방어 역량이 부족
- 보증부인, 책임제한 조항으로 이용자가 리스크 부담

#### ▶ 자사의 특허에 대한 리스크

- 묵시적 특허 라이선스
-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(APL, MPL, GPL v3)
- 특허 보복조항

### ➤ 오픈소스와 특허 (Patent)

- 임베디드(embedded) 시스템의 경우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기술이 오픈소스 SW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

### ➤ 컴플라이언스 위반 - 시사점을 주는 중요 사례

#### 1. 엘림넷 v. 하이온넷 (2006, 2009):

최초의 국내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정사례 (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 
→ 사건의 핵심 솔루션에 대한 소스가 GPL 임을 인정 + 공개 사과문 + GPL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소스코드 전체 공개)

#### 2. Welte v. D-Link (2006):

독일법 아래에서 GPL의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한 사례 (DSM-G600 판매 중지 + 벌금 + 소송비용 일체 + “테스트 장비 구입 & Reverse Engineering 비용”까지 부담)

#### 3. GPL Violations.org v. Skype (2007):

유통업체 책임 및 고지의무 준수와 관련된 독일 판결 (“송수화기의 제조업체는 스페인 SMC 사이지만, Skype가 이 제품을 실제로 판매했으므로 라이선스 요건 충족에 책임을 져야 한다”)

#### 4. FSF v. Apple (2010):

GPL 적용을 받는 앱의 자유로운 배포와 사용에 대한 “추가적인 제한” 금지 (Apple's Usage Rules → GPL 2.0 제 6조 (No Further Restriction) 위반)

#### 5. SFLC v. 14개 글로벌 기업 (2010):

BusyBox 관련, 최초의 한국기업 관련 법정사례 (다음 장에 명단)

### ➤ 컴플라이언스 위반 - 주요 사례

Ex.) SFLC v. 14개 글로벌 기업 : 최초의 한국기업 관련 법정사례

|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BestBuy, Co., Inc                     | Insignia NS-WBRDVD Blu-ray Disc Play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Samsung Electronics America, Inc      | LN52A650 , LA26A450 LCD HDT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Westinghouse Digital Electronics, LLC | TX-52F480S LCD HDT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JVC Americas Corporation              | LT-42P789 LCD HDTV<br>VN-C20U IP Network Camer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Western Digital Technologies, Inc     | WDBABF0000NBK WD TV HD Media Play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Robert Bosch LLC                      | DVR4C Security System DV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Phoebe Micro, Inc.                    | Airlink101 AR670W<br>AR690W wireless routers<br>Airlink101 AICAP650W IP Motion Wireless Camera |
| Humax USA Inc.                        | iCord HD HDTV DV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omtrend Corporation                  | CT-5621, NexusLink 5631/ 5631E ADSL2+ bonded modem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obbs-Stanford Corporation            | Frame Jazz EyeZone B1080P-2 digital media play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Versa Technology Inc                  | PS-730 ITS Gateway<br>VX-BW2250 weatherproof dual radio outdoor wireless access point          |
| ZyXEL Communications Inc.             | P-663H-51 ADSL 2+ Bonded 4 Port Rou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stak In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M-818DVR4V security camera system with DVR,<br>CM-04DE, CM-04DEV security system DVR devices  |
| GCI Technologies Corporation          | Cortex HDC-3000 digital music controll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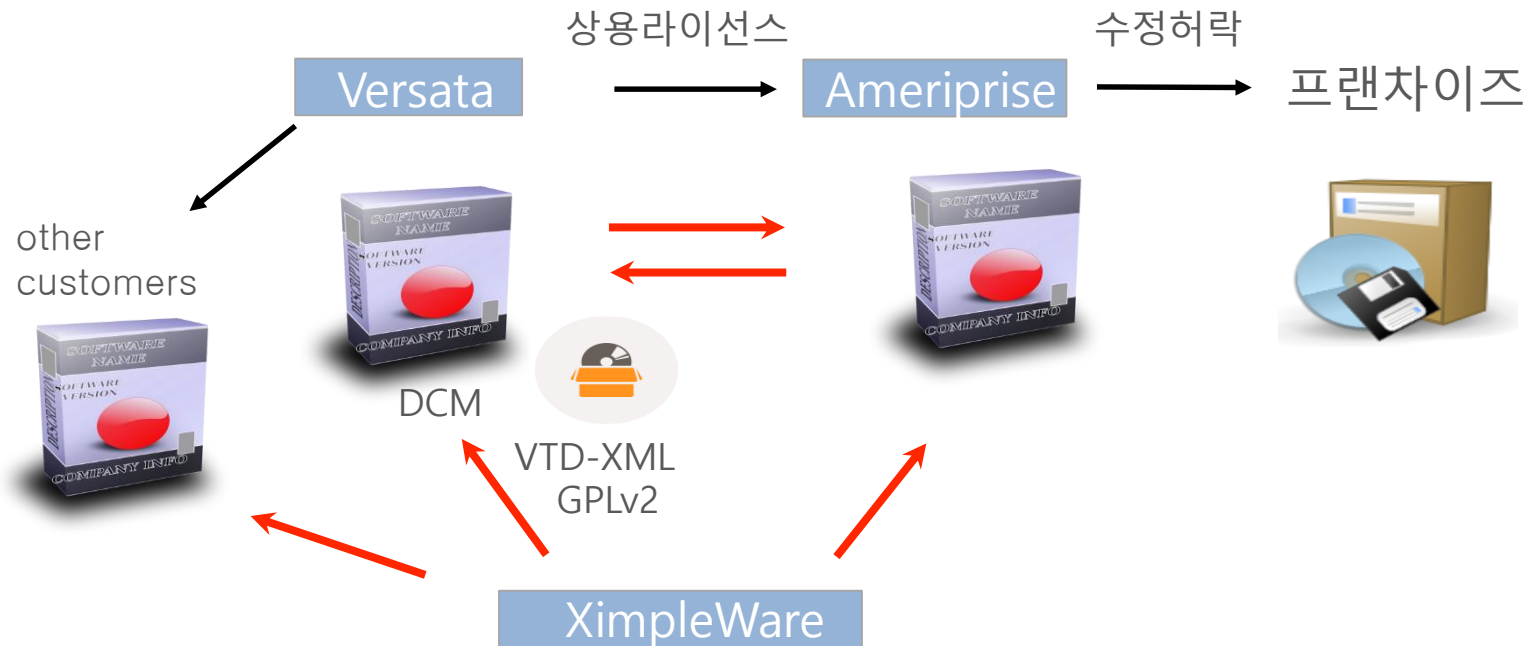
### ➤ 컴플라이언스 위반 - 최신 사례

#### ▣ 최근 분쟁 사례

- ✓I. 삼성전자 exFAT (2013)
- ✓II. Versata Software v. Ameriprise (2015)
- ✓III. Google v. Oracle (2016)
- ✓IV. Patrick McHardy v. 다수의 유럽 제조 및 유통사 (2016~)
- ✓V. Artifex Software v. Han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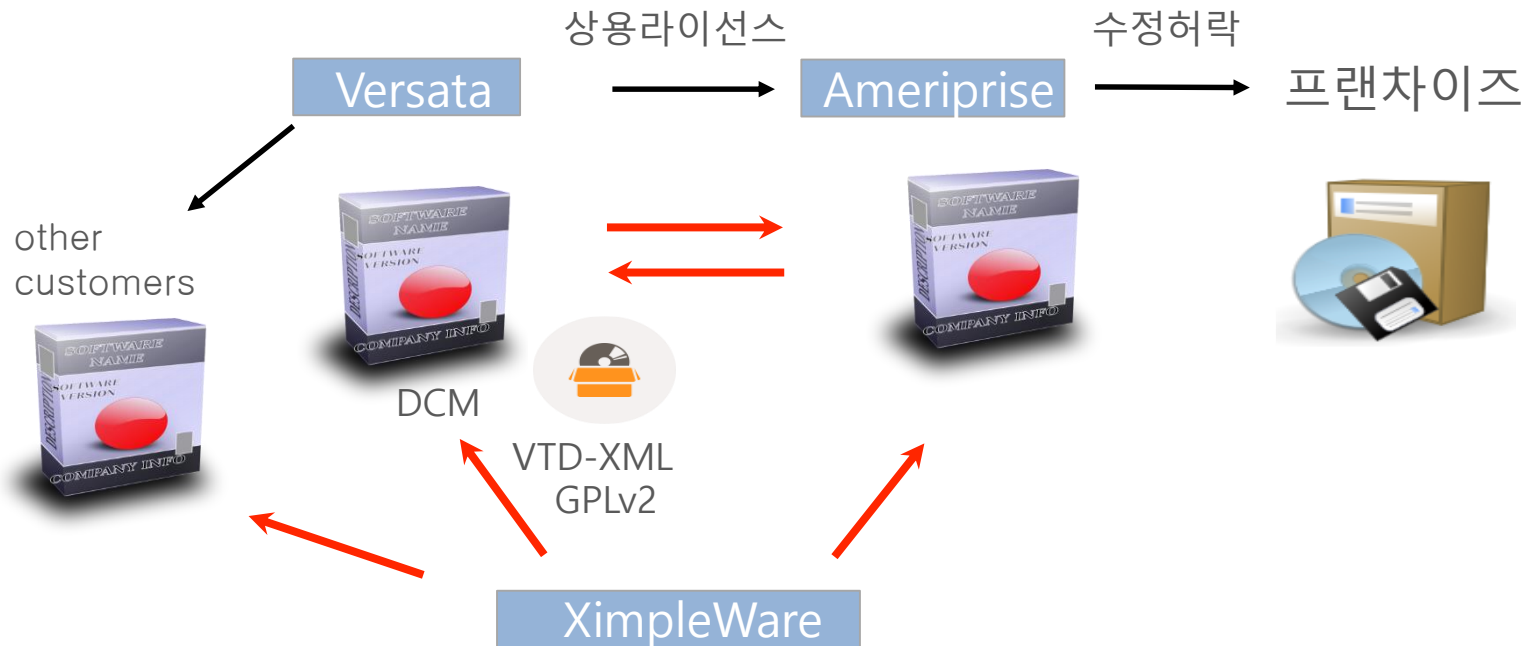
## II.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

### ■ I. Versata vs. Ameriprise (2012 & 2014 → 2015)



# I. Why ? (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 – 최근 분쟁 사례 2[도식화])

## ■ I. Versata vs. Ameriprise (2012 & 2014 → 2015)



## II.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

### ■ I. Versata vs. Ameriprise (2012 & 2014 → 2015)

#### 제기된 이슈

-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SW를 넘겨준 것이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
- GPLv2를 위반한 제품의 단순 이용자의 책임
- 제3자의 GPL 효력 주장 가능 여부

#### 시사점

- OSS 사용에 대한 내부 정책 확립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확인 필요
- 제품 배포시에 FOSS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 필요

#### XimpleWare의 특허 침해 소송

XimpleWare v. Versata, Aurea Software Inc., Trilogy Development Group, Inc., Ameriprise Financial Services, Inc., Ameriprise Financial, Inc., United HealthCare Services, Inc., Waddell & Reed, Inc., Aviva USA Corporation,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, Pacific Life Insurance Company,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, Inc. (subsequently dismissed), Wellmark, Inc., Case No. 5:13cv5161, U.S. District Court,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(San Jose).

#### XimpleWare의 저작권 침해 소송

XimpleWare v. Versata, Trilogy Development Group, Inc., Ameriprise Financial, Inc., Ameriprise Financial Services, Inc., Aurea Software, Inc., Case No. 3:13cv5160, U.S. District Court,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.

### ■ II. Patrick McHardy (2013~)

- 리눅스 커널 개발자인 Patrick McHardy는 2013년 12월부터 적극적으로 독일에서 GPL 소송제기를 시작하였음 (독일 내에서만 50 여 개 기업이 소송 당함)
- McHardy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, netfilter, iptables, iproute2, IMQ 그리고 nftables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
- 중/소기업에서 시작하여, 현재는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진행/합의 중
- 최근에는 채널/유통업체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음

## II.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

### ■ II. Patrick McHardy (2013~)

- 한국 관련: 2016년 말부터, 한국의 기업들도 warning letter 를 받기 시작 → 법률적 분쟁 예상 됨
- 시사점 = 특허 트롤 (Patent troll) 들과 유사한 형태의 “저작권 트롤” (copyright troll) 등장
- 기존의 라이선스 집행 사례와 상이한 점 :
  - 경제적인 동기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짐
  - 현재까지 합의된 건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불안감 증대(한국 기업 포함)
  - 커널 기반의 저작권
  - 조잡한 “정지 명령” (Cease and Desist Letter) 편지
  -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는 소송제기
  - 적발된 기업이 아닌, McHardy와 그의 변호사가 먼저 합의조건을 제시 함
  - 컴플라이언스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논이 없음 (기업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함)

## II.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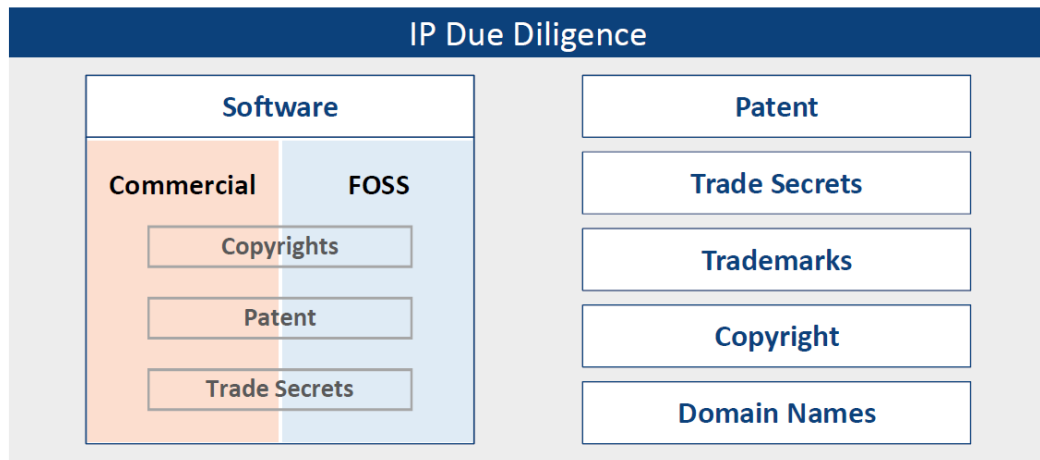
### ■ III. Artifex Software v. Hancom (2016~)

- 한컴 오피스의 PDF 모듈에 사용된 고스트 스크립트
- 고스트 스크립트는 GPL이 적용된 오픈소스로 듀얼 라이선스 정책 채택
- 고스트 스크립트의 저작권자인 Artifex Software가 한컴을 계약위반과 저작권침해로 제소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1] IP 실사의 목적

- Target 의 IP 자산 현황과 Transaction 이후 산업 운영에 필요한 IP 사이의 Gap 을 확인

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2] OSS 실사의 필요성

- 오픈소스가 기업에 유입된 후 외부로 공급되는 여러 경우 존재 → M&A 로 인해 전체 SW 자산이 한번에 포괄적으로 유입되는 경우 → 다양한 라이선스 준수 여부가 문제
- SW 보유 기업이 target (피인수 기업) 이 되는 경우 → SW 자산은 인수합병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가치 평가와 인수합병 대금의 중요한 기준
- Target 기업이 가진 특정 SW 솔루션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
- 특정 SW 가 오픈소스를 포함/사용하고 있는지 & 사용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라이선스들이 target 기업을 보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target 기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사의 중요한 내용이 됨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2] OSS 실사의 필요성

- 인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SW와 target 기업이 보유한 OSS SW 를 결합시킬 경우 → 라이선스 상충이 예상된다면 상충되는 소스코드의 부분을 자체 개발해 대체하거나, 상충되지 않는 다른 라이선스의 OSS로 대체하거나, 상용 SW로 대체해야 함 → 이러한 대체 비용은 M&A 시에 target 기업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
- Target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거나 개발한 SW에 대한 정확한 DD 를 기반으로 OSS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한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고, 확인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미리 강구해야만 내재된 OSS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짐
- OSS DD는 M&A 뿐만 아니라, 분사, 합작 투자법인 설립, 전략적 제휴 등의 경우와 대상 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3] OSS 실사 관련 사례 (1 of 3)

- [1] IBM 의 톱크 다이내믹스 (Think Dynamics) 인수

- 사실관계

- » Target인 Think Dynamics는 Think Control 프로그램에 관해 OSS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
    - » M&A 시, OSS 실사 과정에서 인수 기업인 IBM은, 위 프로그램의 OSS 라이선스 위반 사실을 발견 함 → 그게 기초해 인수 대금 의 대폭 감액 주장 → 인수 가액을 크게 낮춤

- 시사점

- » OSS 실사를 통해, target 기업의 실제 가치 평가 & 인수가격 협상 관련 유리한 고지 점령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3] OSS 실사 관련 사례 (2 of 3)

- [1] Cisco의 Linksys 인수 (FSF v. Cisco)

- 사실관계

- » Broadcom이 OSS를 이용하여 개발한 SW 모듈을 Linksys에 제공한 후, Cisco가 Linksys 인수
    - » FSF (Free Software Foundation) 가 Cisco를 상대로 GPL 2.0 및 LGPL 2.0 위반을 이유로 소송 제기

- 시사점

- » M&A 과정에서, OSS Audit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- [3] OSS 실사 관련 사례 (3 of 3)
  - [3] 오라클의 테켈렉 인수 (Continuent v. Tekelec)
    - 사실관계
      - » Continuent는 DB 클러스터링 및 복제 SW인 텅스텐 (Tungsten)을 배포
      - » Tekelec은 SW 개발 시, Continuent의 텅스텐 GPL 버전 사용 → 라이선스 의무 불이행
      - » 그 상태에서 Oracle이 Tekelec 인수 → Continuent는 인수기업인 Oracle을 상대로 Tekelec이 GPL 2.0의 저작권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
    - 시사점
      - » M&A 이후에도 , OSS 라이선스 위반이 있으면 → 인수한 기업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

### ➤ [HOT ISSUE] M&A 시의 “오픈소스 실사” (OSS Due Diligence)

#### – [4] [결론] OSS IP 실사 실패 시 결과



- ✓ 거래 무산/지연
- ✓ 거래 가격의 조정(감소)
- ✓ 수익 감소(손실 발생)
- ✓ 도덕성 측면의 문제 발생

# 감사합니다

---

소프트웨어 대응팀 윤종수 변호사

[jay.yoon@leeko.com](mailto:jay.yoon@leeko.com)

(T) 02-6386-6601

(F) 02-772-4001

Lee  
& Ko